

제214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
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유승용 의원 발의】



2019. 6. 19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122호로 2019년 6월 5일 유승용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과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 삭제
(안 제5조, 제8조)
- 나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
(안 부칙 제2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
「사회복지사업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건은 상위법령인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과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
- 주요 내용은
 - 안 제5조,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
 - 안 부칙 제2조에서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」 폐지를 규정하였음.

- 본 조례안은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과 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개정으로 복지위원 관련 조문이 삭제되어 복지위원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,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